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4. 10.(화) 14: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티켓몬스터 등 13개 사업자
- (2012-20-070~082)

o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주)티켓몬스터 등 13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법 위반 내용

- 동 법 제22조제1항 : (주)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 그루폰(유), 엠케이(주)
- 동 법 제25조제1항 : (주)티켓몬스터
- 동 법 제31조제1항 : 그루폰(유), (주)티켓몬스터, (주)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주), (주)유이크 플랜, (주)와이제이그룹
- 동 법 제24조의2제3항 : 1개 사업자*
- 동 법 제25조제2항 : 10개 사업자*
- 동 법 제28조제1항제1호 : 10개 사업자*

② 행정처분 내용

(1) 과징금

- (주)티켓몬스터 : 8,710만원, 그루폰(유) : 2,800만원, (주)엠제트케이오알 : 120만원

(2) 과태료

- 13개 사업자* : 300만원 ~ 800만원

(3) 시정명령 : 13개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⑦ 보고사항

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신중계서비스 종류와 제공범위, 기간통신사업자 역할, 통신비 분담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식제법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 종류와 제공범위 등(안 제4조~제7조)

-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 등)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인 또는 일반인과 문자(메신저, SMS 등)나 영상(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중계서비스 이용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범위) 국내통화, 한국어 음성·문자 및 한국수화에 대한 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무휴(365일 24시간) 제공

② 기간통신사업자 역할, 통신비 분담기준 등(안 제10조~제11조)

- (통신사업자 역할) 기간통신사업자는 센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를 분담하고, 센터 중계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에 협조
- (통신비 분담기준) 검증 완료된 사업자 영업보고서의 전화서비스 매출액 기준, 전체 사업자 매출액 중 자사 매출액 비율대로 비용 분담

③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설치·운영)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업무, 운영예산)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개발, 분담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운영예산은 방통위가 확보하여 지원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 '12. 4. 10 ~ 4. 30.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 '12. 5. 1 ~ 5. 12.

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에 관한 사항

-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다양화 및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 점검결과를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 점검결과)

① 전산시스템 개발

-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SK, KT)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
-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KAIT)를 구축하였고, 이통사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 진행 중('12.3.19.~4.13)

② 단말기 식별번호 표기

- 5월부터 생산·출시되는 단말기에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표기하기로 단말기 제조사(삼성, LG, 팬택)와 협의 완료

③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출시

-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4월 중 협의 마무리 추진

④ 제조사, 유통망 준비 상황 점검

- (제조사) 삼성, LG, 팬택 등 국내 제조사는 단말기 자급제도 도입에 따라 자체 유통망 구축·활용을 추진 중
-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용자가 제조사 유통단말, 중고폰 등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 개편 중(~5월 중)
- (오프라인 유통망) 대형마트 등은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단말기 유통을 준비 중

⑤ MVNO의 자급 단말 유통 지원

- MVNO의 자급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SK, KT, LGU+)의 망적합성 시험기간(3개월→2주)을 단축하기로 이통사와 협의 완료
- MVNO 사업자의 단말기 공동 조달 지원을 위해 제조사,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 구축 지원 추진

⑥ MMS 호환

-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호환을 위해 5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기종의 스마트폰에 OMA 규격을 탑재하여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협의 완료

※ OMA(Open Mobile Alliance) : 모바일 개방형 표준화 기구

⑦ 단말기 분실·도난 시 사용 차단

- 현재 단말기 분실 시 전화번호 신고만으로 사용 차단이 가능하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 후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도 신고해야 하므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고객이 원할 경우 이통사가 식별번호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예정

⑧ 단말기 자급제도 홍보 추진

-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단말기 구매 시 점검사항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 구축 추진 중(~4월 말)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언론 홍보 등 홍보 강화 추진

○ 향후 일정

- 이통사와 요금할인 제도개선안 협의, 확정 : ~'12. 4월 중
-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 유통업체와 집중 협의 : ~'12. 4월
-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 : '12. 5월 ~

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운용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등(안 제54조 제2~3항)

- (운용방식)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 (변경송신 금지)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는 것을 금지

(2)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안 제65조의 2, 부칙)

- (설립형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주요업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업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장비 지원,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체험 및 교육 등을 규정
- (부칙)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 시청자 지원사업 위탁협약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하도록 규정

② 고시(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 제정안 주요 내용 >

- (인정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신청을 받고, 신청한 채널을 장애인 복지채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공표
- (인정기준) 장애인 복지와의 적합성, 공적 책임의식, 사업 수행 능력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 판단

- (운용방식)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채널이 복수일 경우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규정

o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2. 4 ~ 5월
- 위원회 의결, 규제위·법제처 심사 : '12. 5 ~ 6월
-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 : '12. 6 ~ 7월

라.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o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및 기술기준 고시 위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o 주요내용

① 전파사용료 감경

(1)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 8)

-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현행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

(2)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전파사용료 한시적 면제(안 제9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 MVNO가 사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3년간 유예

(3)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 8)

- 사물지능통신은 소량의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현행 무선데이터 통신 단가(30원) 적용

(4) 고주파대역의 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2항 별표 9 및 별표 10)

- 고주파수 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의 전파사용량계수 및 선평 계수를 하향 조정

②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별표 3)

-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산정기준은 고시로 위임

③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 시설자는 손실내용을 제출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

④ 기술기준 고시(무선설비규칙) 위임(안 제12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기타업무용 무선설비,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고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

⑤ 무선종사자 기술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 개정(안 제99조제3항제4호, 제106조제2항 별표 16, 제115조 별표 17, 제116조제1항제1호, 제117조제1항 등)

- 모르스 부호를 주된 직무로 하는 '전파통신'과 GMDSS를 주된 직무로 하는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 자격으로 통합

⑥ 이동통신 무선국 분류개선(안 제24조제2항제1호, 제65조 별표 6)

- 신고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중 이동통신 종류로 열거된 '셀룰러·PCS·IMT-2000'을 삭제하고 '이동통신'으로 단일화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2년 4월 ~ 5월
- 위원회 의결 : '12년 6월 초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2년 6월 초
- 법제처 심사 : '12년 6월 중
- 차관·국무회의 상정 : '12년 6월 말

마. 조립PC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한 조립PC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① (조립PC의 인증 면제) 인증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된 PC는 인증절차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 ② (소비자 보호) '인증받은 부품으로 조립되었으나 완제품 PC로는 시험·인증받지 않았다'는 경고 문구를 PC 케이스에 표시
- ③ (사후관리 강화) 인증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부품이 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유통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단속 강화

- ④ (품질관리 지원) 조립PC 업체의 제품에 대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 무료 제공 및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자파 대책기술을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12. 4월 : 조립PC 인증 제도 개선방안 발표
- '12. 4 ~ 6월 : 사업자 계도기간
- '12. 7월 : 적합성평가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개정
- '12. 11월 : 전파법 개정

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 KBS·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MBC의 2/3 수준으로 하는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

②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

- (경감대상 및 금액 확대)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업자로 확대 하고 경감하는 금액도 확대(안 제13조제2항)
- (분담금 경감 소급적용) 개정(안)의 분담금 경감을 확대하는 규정을 2012년도 분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안 부칙 제2조)

○ 향후일정

- '12. 4월 중순 : 입법예고
- '12. 6월 초순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건 상정
- '12. 6월 중순 : 총리실 규제심사
- '12. 7월 중순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⑧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함

6. 폐 회 (15:35)